

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가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일부개정 정관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2013년 3월 12일

협의회 정관 제 61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일부개정 정관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 중 ‘화북 1동 1112-1번지’ 를 ‘청풍남 8길 12-1(화북1동)’
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중 13호 ‘공동모금사업의 지원’ 을 ‘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 조성’
으로 하고 14호를 아래와 같이 하며, 14호부터 18호까지를 각각 15호부터 19호로 한다.
14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

제 9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중 2호의 ‘8인 이내’ 를 ‘5인 이하’ 로 하고 3호를 다음과
같이 한다.
3. 이사 15인(회장 · 부회장 포함)

제 11 조(임원의 임기) 중 제3항의 ‘1월 이내’ 를 ‘2월 이내’ 로 한다.

제 18 조(총회 의결사항) 중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3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4호부터 6호까지로 하고, 7호부터 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7.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

제 19 조(총회의 소집 등) 중 제1항 ‘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’ 를 ‘소집한다’ 로 한다.

제 21 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중 ‘출석과’ 를 ‘출석으로 개의하고’ 로 한다.

제 22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중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대리인은 각각 소속 법인(단체)의 임직원, 다른 회원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-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총회 회의록) 중 제1항과 제2항의 ‘의사록’ 을 ‘회의록’ 으로 하고 제2항의 ‘3인’ 을 ‘10인’ 으로 하며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회장은 회의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25 조(이사회 의결사항) 중 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9호와 제10호를 삭제한다.

1. 회원 자격상실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
제 27 조(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) 중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 28 조(서면결의)를 삭제 한다.

제 30 조(이사회 회의록)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‘의사록’ 을 ‘회의록’ 으로 하고, 제2항의 ‘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’ 을 ‘참석 이사 전원’ 로 하며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회장은 회의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40 조(사업실적 및 결산) 중 ‘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’ 을 ‘이 회의 사업실적’ 으로 한다.

제 41 조(사무처) 중 제3항의 ‘총괄 · 지휘’ 를 ‘지휘 · 통할’ 로 한다.

제 46 조(해산) 중 ‘이사회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찬성과 총회’ 를 ‘이사회와 총회의 재적 인원 4분의 3’ 으로 한다.

제 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46 조의2(잔여재산의 귀속)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범위) 제9조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만료시부터 적용한다.